

#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언론소비자 입장을 중심으로 -

김 성

광주 중재위원, 전 호남신문 편집국장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또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16일 광주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 위원(광주 중재위원, 전 호남신문 편집국장)이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언론소비자 입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광주 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규장 중재부장(광주지법 부장판사)의 사회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1. 필요성 높아져가는 언론중재제도

### 가. 다매체 사회에서의 언론소비자 환경

현대 사회는 다양화 사회로 불린다. 인류의 사 고나 철학적·학술적 범위뿐만 아니라 각기 분리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영역간의 교차범위 확대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방법 또한 다양해졌 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현의 방법만을 별도로 생 각해 볼 때 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매체 가 존재하는 ‘다매체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특 히 기존에 존재해 온 신문, 방송 매체를 뛰어넘어 인터넷 신문·방송, 포털, 블로그 등의 등장으로 매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더구나 인터넷 등 새로 등장한 매체는 파급효과 가 엄청나 그 피해의 규모가 크고, 자칫하다간 개 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겨 줄 가능성 이 높아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보의 이동이 시

스템에 의하거나, 훈련된 게이트키퍼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사 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뉴스의 전달자, 즉 ‘중간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무의식적으로 기능하 게 되었다는 점이다.

언론의 주변 환경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수용자 들은 언론기관을 ‘제4의 권력’, ‘민주주의 수호의 파수대’로 보아오던 견해에서 벗어나 언론소비자 의 입장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상업적 정보회사’ 로 간주하는 견해가 높아지면서 여기에 부응하는 소구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언론매체에 의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로서 의 권리행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 향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를 보 호하는 법률이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 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해주 고 있다.

## 주제논문

또 전통적인 피해구제방식인 재판에 의한 것 보다, 우선 처리기간이 짧은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재판에 의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언론소비자 의식에 맞춰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한 형편이다.

## 나. 새로운 언론환경의 특징

새로운 언론환경의 특징은 첫째, 매체의 다양화 및 매체수의 증가이다. 기존 언론매체부터 살펴보면 신문의 경우는 종합일간신문 외에 수없이 많은 전문지, 주간지, 지방지 등이 생겨났고, 영상매체 역시 대형 라디오, TV 방송사는 차치하고라도 케이블TV, DMB, IPTV, 영화 등이 더 수용자와 밀착되어 있다. 혁명적인 변화는 인터넷의 보편화에 있다. '포털'이라는 공용인터넷 사이트에서 1인 1개 시대를 맞고 있는 '블로그'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보가 무차별로 공개되고 있고, 특히 UCC를 통해 동의되지 않는 초상권의 침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다.

둘째, 언론소비자들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자세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하고, 언론인들이 통제받지 않고 작성한 글을 보고 싶어 하는 권리는 언론인이나 정치인 등 제한적인 집단들의 요구사항이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를 희망하면서도 직접 나서서 적극적인 요구자의 입장을 갖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악법이 개정되고, 민주화를 근거로 한 새로운 법률이 어느 정도 제정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언론의 피해구제를 요

구하는 경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권리의식이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나 과급효과가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가 과거 '언론권력'을 가급적 회피하려 했던 것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서슴지 않는 자세로의 전환을 가져 온 것이다.

셋째, 이러한 수용자 의식변화와 달리 언론의 시대적 변화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는 점이다. 언론의 최대 기능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기존의 언론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물론 포털의 정보는 기존 언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수용자의 생각은 영리행위를 하는 포털이나 기존의 언론이나 모두 똑같은 상업적 정보제공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다. 언론중재제도의 변천

언론관련 법의 제정과 개정은 언론자유 확보, 언론민주화와 궤를 함께 해 왔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으로 비난 받아 온 '언론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언론민주화운동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탄생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0년 12월 31일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근거하여 1981년 3월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언론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여망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이 들어선 1989년 폐지되었다. 다만 '반론권'과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간법(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조항을 통해 존속되고, 1999년 헌법

재판소로부터도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 계속 존재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각 분야에서 민주적 제도의 정착을 향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언론피해에 대한 조정신청이 급격히 늘어나고 기존의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나름대로 효용성이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간법이나 방송법에 의존하여 존재하는 중재제도로는 한계가 노정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5년 정간법 개정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직권중재결정권'을 부여하고 '반론보도'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법률용어로 채택되는 등 언론중재제도가 강화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언론소비자의 본격적인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는 단일 법률은 여전히 제정되지 않고 각 정당 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2005년 1월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어 이 해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2. 조정신청 및 처리결과의 변화

### 가. 변화된 언론중재제도

#### (1) 중재기능의 도입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중재위원회는 종래의 조정 및 심의기능 이외에 중재기능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소송 외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수단의 하나인 '중재'(arbitration)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제3자(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률적으로 '중재'는 중재인이 쌍방의 요구를 절충한 타협적

인 중재판정(이른바 절반중재)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잘못된 중재판정에 사실상 불복할 방법이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중재판정은 사전에 당사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그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을 통한 판결과 구분되며, 당사자들의 의지를 통해 중국적 판단을 구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제도라 할 것이다.

#### (2) 인터넷 신문의 포함

언론중재법은 과거 정간물법에서 제외된 인터넷 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여론형성을 주도적으로 담당해 온 '오프라인'의 역할이 감소하고 '온라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신문에 의한 피해구제도 법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는 하나 인터넷 활용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포털의 경우는 피해구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존 언론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한 처리문제도 소홀히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3) 손해배상의 포함

과거 언론피해구제제도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면서 물질적 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 손해배상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권리구제에 철저를 기할 수 있고,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

주제논문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은 심의기간이 짧고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청인들에게는 효율적인 피해구제체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재위원회가 소액이 아니라 거액의 손해배상을 심의하기에는 기간과 전문성에서 극히 제한적이라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중재위원회가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과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정간물법 제19조 제1항)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했던 이유는 중재위원회가 언론관계 법률에 밝은 법조인과 경험이 축적된 언론인, 기타 덕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속히 결정할 수 있고, 법원의 상세한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는 보도의 사실여부를 판가름해야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도입되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더욱 필요해졌다. 따라서 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에 의해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통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나. 조정신청 추세의 변화

지난 1981년부터 언론중재제도가 언론피해구제

체도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벌써 26년이 흘렀다. 이 제도는 언필칭 언론피해구제를 명분으로 해서 출발하였지만 초기였던 1980년대 전반에는 군부독재정권의 시대라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면서 조정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2001년 대비 2006년의 조정신청 건수만을 비교하더라도 증가율이 64.9%나 되었고, 2006년에는 연간 신청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는 기록을 보였다.

1995년까지는 중재위원회가 사실상 ‘조정’ 역할 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의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한다거나 신청인의 ‘취하’를 조건으로 ‘속보’ 및 ‘PR기사 게재’로 피해구제를 높이는 방법을 구사하였다. 피신청인이 정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불성립이 됐을 때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취하해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전반적인 피해구제율은 1990년대나 2000년대와 비교해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직권중재결정권이 중재위원회에 도입되면서 이를 활용한 조정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전체적으로는 정정보도 청구건수가 60%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2003년도에는 69.5%까지 차지하기도 했으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진 2005년 이후에는 평균치(59.0%)와 비슷한 수준(60.1%)에 머무르더니 2006년에는 평균치보다 적은 50.2%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법 시행 첫 해인 2005년에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16.0%를 차지했고, 2006년에는 29.3%로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겨우 2년간 시행된 통계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정확히 분석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향후에는 조정의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언론피해에 대해서는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청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정신청인의 경우 '개인' 신청인은 점차 줄어들고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의 신청이 늘어났는데 이는 행정기관들이 언론과 적대적인 관계를 피하려 하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전혀 다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특징은 언론을 상대로 피해를 구제하려는 집단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언론민주화 이후 언론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정신청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의 경우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경제인, 전·현직 공무원, 정치인 순서이며 학생·주부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경제인이 많은 것은 언론에 의한 피해가 심대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언론에 약하다고 이야기되던 공무원에서부터 주부까지 있는 것은 앞서의 지적처럼 언론피해에 대해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정 대상 매체는 큰 흐름으로 볼 때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청구대상 비율이 크게 낮아진 반면, TV와 인터넷 신문은 증가하였다. 반면 지방일간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TV와 인터넷이 현대 미디어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청구 건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다. 언론조정신청 처리결과 분석

지난 25년간 조정신청한 건수 중 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은 피해구제율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는 50%를 밑도는 경우가 많았고 민주화 이후에도 50%대에 머문 경우가 몇 차례 있었지만 대략 60%대에서 정착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피해구제율이 60%대라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은 언론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그 처리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것을 뜻한다. 매체별로는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주간신문은 피해구제율이 60%내외인데 반해 TV와 라디오는 43.7%와 50%로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 케이블TV(68.2%), 통신(92.9%), 인터넷 신문(72.2%)은 다른 매체에 비해 피해구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3. 언론중재제도에서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의 조정 방안

#### 가. 인격권 침해 사례의 확대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언론소비자의 의식제고로 '인격권' 문제가 급격히 부각되고 있다. 인격권에 관한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권리들을 의미한다.

언론으로부터 인격권을 침해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길은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정정이나 반론,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고, 승소하였을 때 공표청구 등을 하며 마지막으로 재산적 손해나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있다.

2005년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금지와 손해

주제논문

배상청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명예권(신용권),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전체 건수의 10%를 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언론중재제도가 가지고 있는 신속성 그리고 지금까지의 높은 피해구제율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 인격권의 개념 및 보호범위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은 인격권을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인격권은 헌법에서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조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 조항, 언론중재법과 민법 기타 앞서 본 실정법들 규정에 근거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 인격권의 주체는 태아로부터 사망하기까지의 자연인은 인격권을 가지며, 생명·자유·신체·건강·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음성·대화에 관한 인격권, 정조에 관한 인격권, 자기운명결정권의 경우 자연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명예, 초상, 성명, 저작물 및 사적문서에 관한 인격권, 자기정보통제관리권, 학문과 예술에 관한 권리, 퍼블리시티권 등의 경우 법인, 조합, 단체까지 주체가 될 수 있다.

(2) 명예권의 개념 및 보호범위

명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를 말하는 내적 명예, 사람의 인격적 가치

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외적 명예,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말하는 명예 감정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명예가 훼손되려면 사실에 대한 적시가 되어야 하는데 라디오 및 TV에 의한 뉴스보도, 드라마, 다큐멘터리, 연예오락물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일간·주간·월간지에 의한 스트레이트 기사, 인터뷰·논평·비평·사설·가십기사, 풍자·만평·독자투고·폭로·광고 등에 의한 경우,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되거나, 인터뷰의 조건이 무시된 보도 등을 들 수 있다.

(3) 초상권의 개념 및 보호범위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영리적으로 사용된 경우 그 대가를 구할 수 있는 권리(초상영리권)를 말한다. 초상에는 사진, 동영상, 컴퓨터 합성 화면, 목탄 스케치로 작성한 인물화, 몽타주, 소묘, 풍자만화, 인형, 일러스트레이션, 캐리커처 등 제한이 없다.

(4)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및 보호범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지 않

고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자기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고 침해받지 않으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기에 관한 정보의 유통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개인의 남녀관계, 가족관계, 학력 및 사회적 경력, 결혼 및 이혼 경력, 병력이나 신체 및 정신상의 결함, 재산관계, 사상이나 정치적 신조, 민·형사 사건에 관련된 정보 등이 해당된다.

(5)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보호범위

대중매체의 발달로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정치인, 예술가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성명, 초상, 기타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인격적 요소가 본인의 승낙 없이 또는 계약 범위를 넘어 광고나 달력, 카드 등 물품에 사용되는 경우 생기는 침해를 말한다. 침해의 유형으로는 허락 없이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 그 모습이 새겨진 상품이나 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 특정 공간이나 물품에 타인의 성명을 붙이는 경우에 해당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상의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의 방법 및 종류

(1)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로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실제 조정결과에서

도 살펴볼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종류

손해배상에는 재산상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

재산상 손해배상은 언론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당해 영업이 부진해졌거나 파산, 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말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악의, 의도적 무시, 고의성 있는 경우 장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3) 손해배상 신청액의 비교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재판을 통하는 방법과 2005년 이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으로 이원화됐다. 두 청구방법은 두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결정의 시간적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3주 이내에 조정 및 중재를 결정하는 초스피드 결정 방식이지만 재판은 비교적 긴 시간을 요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둘째, 입증자료의 범위가 다르고 이에 따라 결정액도 다르다는 점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손해배상 말고도 정정 또는 반론, 추후보도가 함께 수반되는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자료만을 입증의 근거로 삼고 결정액도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다.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주제논문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동적으로 법정에 소가 제기된다. 이런 경우 재판의 일차적 여과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4) 손해배상 신청내용의 비교분석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언론침해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를테면 미니스커트를 입은 뒷모습을 찍은 사진의 경우에도 소액이지만 손해배상이 이루어졌고, 벚꽃 구경을 하는 회사직원들의 모습을 연인관계로 오인하게끔 했다는 이유로 조정신청된 경우도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는 명예훼손의 경우 300만 원에서 7억 5,000만 원,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100만 원에서 2억 원, 프라이버시 침해는 500만 원에서 1억 원, 음성권 침해는 100만 원에서 3,000만 원, 신용훼손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었으나 실제로 조정은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이루어졌다.

다. 언론중재제도의 장점과 단점

지금까지의 내용에 의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중재제도의 단점과 장점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통한 손해배상은 그 액수가 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신청인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②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재판의 경우는 판결액이 1억 원을 넘는 등 그 액수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조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아 신청인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③ 언론보도로 인한 조정신청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재판과 비교해 빠른 피해구제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④ 언론중재부의 조정이 인간적 화해로 이루어져 마무리가 깔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⑤ 조정에 의한 피해배상 액수가 낮아 언론사가 인격권 침해를 남용할 우려를 가지고 있다.

⑥ 언론중재제도를 통한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아, 자칫 법원 소송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사에 지나친 부담을 가져오는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

4. 결 론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언론중재제도는 여러가지 긍정적 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피해구제율의 증가이다. 이렇게 피해구제율이 높아지는 것은 중재위원회의 조정이 평면적 위치에서 자연스러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중재위원들이 법조·언론·학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조정의 성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둘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구제를 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현대인의 특성과 함께 언론중재제도를 신뢰하는 정도가 높아진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단.

반면 언론중재제도가 보완해 나갈 과제도 없지 않다.

첫째, 언론피해구제를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 인

정하고 이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도 손해배상액이 높아지는 것을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위협적인 존재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제도를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언론사도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이 높아져 언론자유가 위축되었다고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사내 고충처리인의 배치와 적절한 활용을 통해 사전에 손해배상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고충처리인-언론중재위 협의 등을 통해 그 보도의 선에 합법성을 강화한다면 언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는 제한 없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피해구제의 매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일이다.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인터넷 신문을 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나, 포털과 블로그 또한 언론피해를 가져오는 매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포함 여부는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는 형편이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이고, 스피드 사회이다. 정보는 급속도로 이동하는데 침해를 방지하는 법과 제도는 거북이걸음을 한다면 그 의미가 없을 것이다. 언론중재제도가 언론자유를 침해하거나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토 론

사 회 김 규 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정두숙(광주KBS 제작부장) :** 프로그램 제작 시 어떻게 하면 취재원의 성명권이나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을지를 늘 고민한다. 많은 제작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겠지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다보면 의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니터링에 의해 만들어진 평가와 판단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한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도 시 제작의도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가끔 제작의도를 충분히 알렸음에도 일방적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취재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을 전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진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중재부는 조정결정시 제작진의 프로그램 제작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해주었으면 한다.

우리 제작진 역시 언론중재위원회가 기획하는 다양한 토론회나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 토 론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한 사전적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방송의 경우 사전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체심사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방송심의기준에 근거해 보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예방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사전 심의 등 예방적 성격이나 기능을 갖고 있는 언론사의 부서와 언론중재위원회가 서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보를 교류하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언론피해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옥조(광주전남기자협회 회장) :** 우스갯소리지만 언론중재제도가 활성화되면 아마도 현업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오히려 싫어하지 않을까 싶다. 기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로 인해 언론소비자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당연히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특히 최근 독자와 시청자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법조기자들과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있는데 결론은 '사안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과 언론인 간의 시각 차이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쓸 기사가 없다'는 것이다.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기사가 아닌데도 그러한 여지가 있는 듯한 시각이 존재하면 기사의 의도와 편집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당하다해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론나게 현실이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언론소비자, 생산자가 모여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모든 것이 소비자 위주로 움직이는 시대인 이상 편집방향이나 기자들의 의식도 이에 맞게 바뀌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윤수(무등일보 고충처리인) :** 옴부즈맨 제도나 형식적인 제도라는 지적에 공감하며 또 옴부즈맨의 역할이 자사의 홍보나 타사를 비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하기 전에 신문, 방송이 먼저 문제가 있는 보도를 걸러내자는 취지에서 옴부즈맨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기자들과 상충되는 일들이 많아 옴부즈맨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론중재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신문·방송사의 옴부즈맨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언론피해구제에 임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선호(인터넷 광양만권 뉴스 발행인) :** 인터넷 언론의 강점은 현장을 가급적 많이 취재해 기사화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을 취재한 기사가 나가면 대개 관계자들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소멸시켜 버린다. 만약 이런 현장취재 기사와 관련해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자들은 현장 복원의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 현장이 보존되어 있지 않는 한 기자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 취재현장을 복구하고 또 보존할 수 있는 방안도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강구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나정호(보해양조 홍보부 차장) :** 일반 기업들이 업무상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언론중재제도가 중요한 것은 오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언론중재제도의 이용과 절차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고 있으며, 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조정신청을 하며 진행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등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무지한 편이다. 위원회가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많은 사람들이 언론중재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김덕모(호남대 신방과 교수) :** 최근 한 언론의 신정아씨 누드 사진 보도가 언론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공익을 위한 보도로 위법성이 조각될 것인가 아니면 인격권을 침해한 보도인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요즘과 같은 매체 환경에서는 신정아씨 것처럼 알권리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빈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의 법익과 알권리의 충돌에 따른 법적 분쟁이 빈번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언론중재제도라는 효용성있는 법적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신방과 학생들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상근 변호사에게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수강한 바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 이러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김갑숙(광주YWCA 회장) :** 최근 광주지역 여성단

체들이 언론의 오보에 대해 공동 대응한 적이 있는데 언론중재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느라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YWCA가 운영하는 소비자개발센터에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여성들의 문의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YWCA가 운영하는 소비자개발센터와 언론중재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한다.

**조준식(나주시청 홍보팀) :** 전직 기자출신으로 많은 점을 느끼게 하는 토론회이다. 기사시절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언론중재제도였지만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가 된 것 같다. 현재 단체나 기관이 조정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조정대리허가 신청 범위를 너무 좁게 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의 대리인 범위를 부국장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신청인에게도 이와 동등한 정도의 대리인이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의 경우 4급 서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분들이 대리인으로 조정회의에 참석할 경우 시청 업무는 올스톱되다시피 한다. 조정신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실무진으로 대리인 자격을 낮춰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언론중재제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설동희(전광일보 논설위원) :** 언론소비자의 입장에서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언론

## 도론

소비자를 위해서는 그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며 이럴 경우 취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강제로 취재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이 오보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언론은 책임만 지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게 오늘날 취재환경의 현실이다. 취재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사실적 주장에 일부 의견이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다. 언론중재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되려면 사실적 주장에 의견이나 견해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용인되어야 하며, 용인되는 범주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이를 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본다.

**윤종채(무등일보 논설주간) :** 기자들은 진실보도를 생명으로 알아야 하며 실제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선에서 뛰고 있다. 진실보도를 하다보면 가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공익을 위해서라면 일정부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육하원칙에 입각해 빈틈없는 보도를 했음에도 상습적으로 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악의적인 신청인들이 있다. 이런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과감히 기각을 해야 한다. 기각률을 높이는 것이 악의적인 신청 남발을 막고 언론중재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김종일(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 :** 언론중재법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그리고 직권 조정의 경우는 21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14일이나 21일이라는 기간을 경과하여 조정 결정을 유보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과거 KBS 보도국장 재직 시 공무원 비리를 보도하였다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당한 적이 있다. 그 공무원은 자신의 불법행위가 명백함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다음 우리를 압박했다. 조정신청부터 사건처리까지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만약 당시 조정처리 기간이 조금만 길었더라면, 중재위원회에서 결정을 유보했더라면, 기간문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명쾌하게 사건을 매듭지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중재위원회가 그 공무원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언론중재제도에 직권유보결정 제도가 도입되면 악의적 신청과 같은 병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포털로 인한 인격권 침해도 사회적 문제이지만 악의적인 댓글이나 성명서도 인격권 침해의 또 다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세워야 한다고 본다.

**김순홍(한국사회조사연구소 소장) :** 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하는 일이 정치,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제 현상을 조사·분석하고 때로는 이를 보도자료로 가공하여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는데, 보도시 언론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회일비하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특히 공익성과 관련된 사안을 조사할 경우 언론들은 자신들의 입장 때문에 조사의도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보도자료를 해석하여 보도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악의는 없으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악의적인 보도는 아니지만 전문성이 없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조정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